

[분할대상재산명세표]

재판부 : 제 ○ 가사부(또는 가사 ○ 단독)

사건번호 :

원고 :

피고 :

- ※ 주의사항**
1. 아래 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할 예정이므로, 원고 및 피고 모두에 대하여 그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빠짐없이 기재할 것.
 2. 해당 재산에 관하여 특이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기재할 것.
 3. 구체적인 명세표의 기재요령은 별지와 같음.
 -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임.
 - 당사자 사이에 가액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것. 가액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'일치진술' 로 표시할 수 있음.
 4.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'자주 묻는 질문' 게시판에 아래 표의 한글파일이 게시되어 있으니,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도 됨(이 경우 작성한 문서를 준비서면에 파일로 첨부하기 바람).

소유자 등	순번	재산의 표시	재산의 가액 (단위 : 원)	증거	비고	
원고	적극 재산	1	서울 성북구 길음동 ○○아파트 ○동 ○호	200,000,000	을 제1호증	
		2	○○은행 예금(계좌번호 : ○○-○○-○○)	75,000,000	갑 제2호증	2014. 1. 1. 기준
		소계		275,000,000		
	소극 재산	1	서울 성북구 길음동 ○○아파트 ○동 ○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	130,000,000	갑 제10호증	
		소계		130,000,000		
		원고의 순재산		145,000,000		
피고	적극 재산	1	서울 강남구 역삼동 ○○아파트 ○동 ○호	320,000,000	갑 제7호증	
		2	경기 여주군 ○○면 ○○리 275 전 ○○㎡	15,000,000	시가감정 촉탁결과	
		3	○○생명보험 예상해지환급금 (증권번호 : ○○-○○-○○)	2,000,000	을 제4호증	2014. 1. 1. 기준
		소계		337,000,000		
	소극 재산	1	○○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(계좌번호 : ○○-○○-○○-○)	50,000,000	금융거래정보제 출명령회신	2014. 1. 1. 기준
		소계		50,000,000		
		피고의 순재산		287,000,000		
원·피고의 순재산의 합계			432,000,000			

명세표 기재요령

1. 적극재산

- 가. 부동산: '재산의 표시'란에 소재지번 등을 기재하고, '재산의 가액'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한 후,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시가 입증 자료{① 아파트: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{<http://www.kbstar.com/>}와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(<http://rt.molit.go.kr/>) 등 ② 기타 부동산: 가급적 감정서, 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,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}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예금 채권: '재산의 표시'란에 금융기관의 명칭, 계좌번호를 기재하고, '재산의 가액'란에 현재 기준 시점의 예금 잔액을 기재한 후, 예금통장사본, 계좌내역, 잔액조회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: '재산의 표시'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, '재산의 가액'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,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주식: '재산의 표시'란에 회사의 명칭,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하고, '재산의 가액'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한 후 주식예탁통장 사본 및 시가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: '재산의 표시'란에 다른 특허권 등과 구분이 가능한 정도로 권리를 표시하고, '재산의 가액'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바. 동산: '재산의 표시'란에 동산의 종류 및 수량, 현재 있는 장소 등을 기재하고, '재산의 가액'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 시점의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사. 자동차: '재산의 표시'란에 차량번호와 모델명, 출고된 연도 등을 기재하고, '재산의 가액'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한 후, 자동차등록증 사본, 중고차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{해당 차량 가액이 기재된 보험계약서,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 자료,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료(<http://www.kidi.or.kr/>)}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- 아. 보험: '재산의 표시'란에 보험회사, 보험의 종류 및 명칭 등을 기재하고, '재산의 가액'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예상해약환급금(총 납부 보험료가 아님)을 기재한 후,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 소극재산

- 가. 사인 간 채무: '재산의 표시'란에 채권자 성명, 차용 일시 등을 기재하고, '재산의 가액'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채무액을 기재한 후 차용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금융기관 채무: '재산의 표시'란에 대출 금융기관의 명칭, 대출일 등을 기재하고, '재산의 가액'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남아 있는 대출액을 기재한 후, 대출확인서, 부채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: '재산의 표시'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, '재산의 가액'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,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